

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3년 9월 27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4일

## 2. 제안이유

-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군위군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,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·관리의 위탁 근거 마련(안 제4조)
- 편입 전 군위군에서 한 승인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(안 부칙 제2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

## 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상이한 소규모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방법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함과 함께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안 제4조에서는 비급수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·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상위법인 「수도법」 제47조(마을상수도)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·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, 제55조(소규모급수시설)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·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 법체계상 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대구시의 조례상 관리자<sup>1)</sup>가 대표자인 것에 비해 군위군의 조례상 관리자<sup>2)</sup>는 군위군수이나,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에는

1) 현행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·관리조례 제2조(정의) “관리자”

: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.

2) 현행 대구광역시 군위군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 제2조(용어의 정의) “관리자”

: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지역의 군수를 말한다.

수도법 제47<sup>3</sup>)조 및 제55조<sup>4</sup>)에 따라 군위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가 될 수 없고, 관리하여야 할 소규모수도시설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, 현행 대구시의 조례대로 관리자를 주민으로 운영할 경우 고령인구가 많은 군위군의 특성상 관리·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**<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현황 >**

(단위 : 개소)

	대구시		군위군
	동구	달성군	
계	12	10	42
마을상수도	4	6	1
소규모급수시설	8	4	41
現운영방법	상수도본부 : 수질검사, 정기점검,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 및 건강검진 실시 주민협의체 : 물탱크청소, 약품주입, 전기료부담		위탁운영

\* 마을상수도 : 100명 이상 2,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 20㎥/일 이상~50㎥/일 미만인 수도

\*\* 소규모급수시설 :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㎥/일 미만인 급수시설

3) 수도법 제47조(마을상수도)

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4) 수도법 제55조(소규모급수시설)

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·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따라서 현 실정에 맞추어 비급수지역에 한해 현행대로 관리,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은 현 체계를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.
  - 다만 시장과 관리지는 위탁한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, 감독이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
  - 안 제6조(수질검사)와 제8조(개선조치)에서는 수질검사 결과 통보 대상을 추가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, 이 점을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 및 관계자에게 설명 및 홍보하여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  - 안 제9조(유지보수)에서는 유지보수의 주체에 수도법상 의무자인 시장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  - 안 부칙의 경과조치는 「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것이며 이 외에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견은 없음.
- 이상으로,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